

충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1항.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3과목이상으로 실시한다.
- 2항.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4과목이상으로 실시한다.
- 3항.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세부전공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 4항.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5항.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다시 재응시 할 수 있다.
- 6항.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2항.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본 학과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지 않는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술지게재 기준

학술지 종류	학술지 종류
- 학술지 종류 : 국내전문학술지 이상 - 논문 게재 편수 : 1편 이상 - 인정저자 : 주저자 및 교신저자	국내전문학술지(미등재)라 함은 3년 이상의 전문학술지 간행 실적을 가진 전국규모의 국내 전문학술단체가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학술지로서,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함.